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경진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⑧-3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Ⅲ)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최 경 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I)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An analysis of discus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UNCITRAL WG IV

연구자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Choi, Kyoung Jin

2013. 12. 13.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후자는 전자적으로 등록된 약속어음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UNCITRAL에서는 대상이 되는 권리의 유형이나 유통의 목적을 묻지 않고 포괄적인 전자적 권리 유통의 방식에 대한 규범 정립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오프라인 상의 권리의 전자적인 유통이나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유통되는 전자적인 권리 유통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UNCITRAL WG IV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법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UNCITRAL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IV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IV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가능기록에 관한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 경과
 - 2009년 6월에 UNCITRAL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이후 2011년 6월 본회의에서 WG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였음.
 - 2011년 10월 WG IV 제4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시작하여, 제46차 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규정 초안 준비에 합의함.
 - 제47차 WG IV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하여 축조 심의.
 - 제48차 WG IV 회의에서 제47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제2초안에 대한 검토 예정.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존의 UNCITRAL Texts에 대한 소개 및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범적 기초 및 연속성을 가지는 전자계약협약 분석.

□ 제47차 WG IV 회의에서 논의된 제1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에 대하여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 상의 관련 조문과의 비교법적 검토 수행.

□ 제48차 WG IV 회의에서 논의될 제2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2초안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체계와 달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제1조~제6조), 전자거래 규정(제7조~제1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제11조~제28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제29조~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제31조)로 구성.

○ 제2초안 중 제1초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 중에서 적용범위, 적용제외, 정의, 당사자자치,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교부, 제시, 배서,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소개 및 분석.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1초안 및 제2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1초안 및 제2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정책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와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

▶ 주제어 : 전자양도성기록, UN국제거래법위원회,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상거래분과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 of use of transferable records by electronic means, UNCITRAL started to discuss on making new rul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UNCITRAL Texts has been very important for us to develop international trade.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s:
 - Introduction of discussion on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UNCITRAL WG IV.
 -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the related Korean domestic laws.

II . Main Contents

- Introduction of discussion history in UNCITRAL.
- Introduction of previous UNCITRAL Texts includ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as a continuous basis of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Analysis of the first draft of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iscussed in the 47th WG IV
 - Article-by-article Analysis of the first draft
 - General provisions,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first draft and domestic laws including:
 -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Act on issuance and trafficking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ct on Secured Movable and Obligations”, “Electronic Signature Act”, “Civil Law”.
- Analysis of the second draft of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iscussed in the 48th WG IV
 - General,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Transl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draft

III. Expected Effect

- Basic research for the further study in the future
- Making government and corporate possible to respond to new change in a transferable records

➤ Key Words :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CITRAL**, Electronic Bill, Electronic Obligatory Right, **WG IV**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 2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15
제 1 절 전자상거래 W/G의 이전 작업	15
1. UNCITRAL W/G IV 개요	15
2.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	16
제 2 절 전자상거래 W/G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경과	36
제 3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39
제 1 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개관	39
제 2 절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및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41
1. 구성 체계	41
2. 일반규정	42
3.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48
4.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	62

제 4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65
제 1 절 전자상거래 W/G 논의에 대응한 국내 법제도 검토	65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5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67
3. 전자금융거래법	70
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74
5. 전자서명법	75
6. 민 법	77
제 2 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예상논의 및 대응 전략	80
I. 제48차 회의 예상 논의 주요내용 및 검토	80
II. 대응전략	85
제 5 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89
【부 록 1】	9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 -번역문 대조표-	
【부 록 2】	119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 -번역문 대조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적인 거래에 관한 규범을 정립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오고 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UN에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각종 규범 정립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우리의 법규범을 소개하고, 우리 법규범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을 도출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선도적인 입장에 있어서 UNCITRAL의 각종 모델법과 협약을 국내법에 빠르게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2000년 중반까지 전자문서, 전자계약, 전자서명과 같은 법적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00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 새로운 이슈를 찾지 못하고, 전자상거래 분과 실무작업반은 그 기능을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미래 의제로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선정하여 2013년 5월 제47차 UNCITRAL IV 전자상거래 분과 실무작업반에서 처음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이하 “규정안”이라 한다)이 제안되어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및 국제적인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는 향후 최종 채택되는 규범의 성질에 따라 협약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입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되든 각국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범정립의 나침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떠한 방향으로 규범이 정립될 것인가는 향후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전자상거래 W/G에서의 논의에 우리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UNCITRAL에서 논의 중인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우리법제의 내용과 비교검토한 후, 다음 회의인 제48차 W/G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제 2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기준 논의 내용 개관

제 1 절 전자상거래 W/G의 이전 작업

1. UNCITRAL W/G IV 개요

UNCITRAL 전자상거래분과(W/G IV)는 1973년 국제양도성증서에 관한 작업반으로서 처음 출범한 이후 제15차 회의부터 국제 지불에 관한 작업반으로서 활동하였고, 제24차 회의부터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관한 작업반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제30차 회의부터 이름을 변경하여 전자상거래 작업반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규범으로서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 2005년 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였다. 이후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면서 기존의 전자계약협약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전자양도성기록을 미래 아젠다로 채택하여, 2013년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을 처음 공개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UNCITRAL 규범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서도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¹⁾

1)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1집제4호(2009), 137-155면 참조.

2.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

(1) 제정 목적 및 기본 원칙

가. 제정 목적

전자계약협약은 기본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당사자나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업적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국가 내외 국제적인 경제 및 무역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특히 전자적 의사표현(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수단이 이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에서의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과 상업적 예견 가능성(commercial predictability)이 증진되어 각국이 현대적인 무역 통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나. 기본 원칙

전자계약협약은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견 가능성의 증진을 위하여 2가지 중요한 원칙 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술 중립성의 원칙(Principle of Neutrality)과 기능적 동가성의 원칙(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이다.²⁾ 다만, 이러한 원칙들도 당사자가 선택한 수단이 관련 법규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의미를 가진다.³⁾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전자계약협약이 구체적인 기술이나 매체와 관련 없이 모든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현을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약이 특정 기술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이나 보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2) Preambl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3) *Id.*

4) UNCITRAL,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은 이미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도 취했던 접근방식인데, 전자적 의사표현에 의해서도 전통적인 종이 기반의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원칙을 근간으로 한 협약의 모든 규정들은 결국 당사자가 적절한 매체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협약은 각 국이 규정하고 있는 서면 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국의 통신 기술의 발전에 맞게 국내법을 조화시킬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협약은 전자적 의사표현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기는 하지만 각 국의 발전 속도의 차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범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전자계약협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전자적 의사표현(Electronic Communications)이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계약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실은 동 협약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협약 제1조 제2항).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격이 민사적인지 상사적인지의 여부나 당사자의 국적도 동 협약을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협약 제1조 제3항). 이처럼 민사적인 면과 상사적인 면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와 상사에 관하여 일원적 체계(monistic legal system)를 취하는 법제와 이원적 체계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para. 47.

(dualistic system)를 취하는 법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충을 회피할 수 있다.

나. 적용 제외

①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전자계약협약은 개인, 가족 또는 가사(personal, family or household)의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2조 제1항 (a)). 그 이유는 협약의 많은 부분이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의 계약들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자적 의사표현의 수신·발신의 시기와 장소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의 계약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경우에 전자우편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으며, 합법적인 상업적 메시지와 스팸 메시지를 구별하기가 쉬울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거래하는 개인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의 수준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⁵⁾ 또 다른 이유로는 각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계약협약은 각국의 소비자보호규정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협약 제14조는 전자적 의사표현 상의 실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소비자보호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실수와 관련된 규정과는 보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결국 협약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있다.⁶⁾

협약의 적용제외 대상인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의 계약이 의미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계약(consumer contracts)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자계약협약에서는 소비자

5) A/CN.9/548, para. 101.

6) A/CN.9.548, para. 102.

계약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계약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재산 계약과 같이 가족법이나 상속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과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현도 전자계약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⁷⁾

② 특수 금융 거래

전자계약협약은 특수한 금융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이 제외된다. 즉, 규제를 받는 환거래, 외국환 거래, 은행간 지급 시스템, 증권 기타 금융 자산이나 증권과 관련된 은행간 지급 협약 또는 청산·결제 시스템, 중개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권 기타 금융자산 또는 금융증권의 매매, 대차, 소지 또는 환매 약정에 따른 담보권의 이전에 대하여도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2조 제1항 (b)). 그러나 협약이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시스템, 유통증권, 파생상품, 스왑, 환매약정, 외국환거래, 증권 및 채권 시장과 같은 특수한 거래만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때 적용배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거래되는 자산의 유형이 아니라 이용되는 양도 방법이 무엇인가이다. 나아가 규제를 받는 모든 거래 행위가 적용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 거래, 증권 거래, 외국환 거래, 귀금속 거래 등과 같은 특수한 금융거래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유의할 것은 규제를 받는 거래 그 자체 이외에 증권 거래, 외국환 거래, 귀금속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 증권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전자적 의사표현이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중개인에게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발송한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⁸⁾

7)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Supplement No. 17 (A/60/17), para. 29.

8) Explanatory note, para. 79.

③ 양도성증서나 권원증권 등

전자계약협약은 특수한 금융거래 이외에 환어음, 약속 어음,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2조 제2항). 이러한 양도성증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 형태 사이에 단순히 기능적 동가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전자계약협약의 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양도성증서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⁹⁾

④ 개별적인 적용 배제

적용배제에 관한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협약 제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위한 계약, 법원·행정기관·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관여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계약, 가족법이나 상속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 등도 적용 배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¹⁰⁾ 결과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적용배제사유 이외에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¹¹⁾ 이에 따라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적용 배제 사유 이외에 각국이 전자적 의사표현을 특수한 경우에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약 제19조에 따라 선언함으로써 개별적인 적용 배제 사유를 설정할 수 있다.¹²⁾

9) A/CN.9/571, para. 136.

10) A/CN.9/548, para. 110.

11) 논의 과정에 대하여는 A/60/17, paras. 25-30; A/CN.9/571, paras. 59-69, 136; A/CN.9/548, paras. 98-111, 112-118; A/CN.9/528, paras. 49-64, 65-69; A/CN.9/527, paras. 82-98, 99-104 참조.

12) Explanatory note, para. 83.

다.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전자계약협약은 기본적으로 제1조에 의하여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전자적 의사표현이 이용되는 경우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적용 배제 사유를 제외한 범위에 적용된다. 그런데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인 경우에도, 협약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결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자치의 한도에서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자치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한정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정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상황 하에서 특수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도록 법이 강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협약에 규정된 당사자 자치에 관한 규정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당사자 자치를 이유로 하여 제정법 상의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¹³⁾ 이처럼 당사자 자치가 제정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협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 의사표현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현이나 전자서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¹⁴⁾

전자적 의사표현이 계약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 자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협약의 당사자 자치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국에 지시되는 협약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⁵⁾

13) A/CN.9/527, para. 108; A/CN.9/571, para. 76.

14) A/CN.9/527, para. 108.

15) A/CN.9.571, para. 75.

(3) 개념 정의

전자계약협약 제4조에 규정된 용어는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 법’ 상의 개념 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협약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할 수 있게 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협약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협약에는 “의사표현”, “전자적 의사표현”, “송신자”, “수신자”, “정보시스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영업소”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가. 의사표현(Communication)

협약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의사표현(communication)’이다. 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의사표현이란 청약과 승낙을 포함하여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진술, 선언, 요구, 통지 또는 청구를 의미한다(협약 제4조 (a)).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 등 계약 전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¹⁶⁾ 결국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ommunication’의 번역을 두고 “의사표시”¹⁷⁾나 “통지”¹⁸⁾로 번역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는 의사표시가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528조 제2항의 승낙연착의 통지

16) Explanatory note, para. 91.

17) 법무부,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 2008., 232면; 정완용, “국제 전자계약협약안에 관한 고찰”, 디지털재산법연구, 제4권 제1호, 2005, 90면;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 48면.

18)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 97면.

는 우리 민법 이론 하에서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자계약협약 상에서는 ‘communic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번역에 있어서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하며, 기존 법질서에 비추어 독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이 강조되는 국제법과 국내 법이론과의 혼란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한다.¹⁹⁾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가 전자문서로서의 기능 외에도 기술적인 통신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통지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 이론 하에서 준법률행위의 유형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통지”라는 번역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²⁰⁾ 나아가 협약의 “communication”은 법교의학적인 의사표시의 주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협약 초안은 데이터메시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메시지의 오류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메시지 대신에 ‘electronic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electronic communication’이라는 표현이 합리적이고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체결과 이행시 당사자간에 사용되는 종이기반 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는 무차별 원칙과 동질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표시’라는 용어에 대비하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²¹⁾ 다만, “전자계약협약상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법교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표시”라는 용어와 다르지만 전자거래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²²⁾이며, ““전자적 의사

19) 오병철, 상계논문, 97면. 한편 같은 논문 각주 22)에서 유효한 논거는 아니지만 중국어판 전자계약협약에서 ‘통지’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공식 협약문에 보면 “通信”이라는 보다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ch_X_18.pdf> (2009.12.11. 방문). ‘communication’의 사전적인 번역례에 따라 중국어판의 번역례와 같이 “통신”으로 번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통신은 기술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표현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나 통지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0) 정진명, 전계논문, 53면.

21) 정진명, 전계논문, 52-53면.

표시”는 법교의학적인 “의사표시”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법교의학적인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고, 적용영역이 동일한 경우에만 그 효과를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²²⁾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전자계약협약의 기초적인 용어의 번역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협약의 제정 취지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의사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협약 제4조 (a)에 의하면, “communication”은 우리 민법 이론 하에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이 모두 포함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또한 전자계약협약은 규범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실체법적 규정을 두지 않고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만 규율하고자 시도하였다. 예외적으로 실체법적 규정을 둔 경우에도 전자적 의사표현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의 두 견해와 같이 “의사표시”나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적 요소와 중첩되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자계약협약 상의 “communication”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광범위한 정보 교환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인데 이를 제한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협약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 따라서 협약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존 실체법적 요소와의 중첩에 따른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중립적 번역례로서 새롭게 “의사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전자적 의사표현(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적 의사표현이란 당사자가 데이터메시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의사표현을 말한다(협약 제4조 (b)). 데이터메시지란 EDI나 전자우편, 전보, 텔렉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기타

22) 정진명, 전계논문, 52면.

23) 정진명, 전계논문, 53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협약 제4조 (c)).

다. 송신자(Originator)와 수신자(Addressee)

전자적 의사표현의 송신자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적 의사표현을 송신한 자 또는 저장되기 전에 전자적 의사표현을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협약 제4조 (d)). 다만, 전자적 의사표현과 관련한 중개자(intermediary)는 제외된다. 수신자란 송신인에 의하여 전자적 의사표현을 수신하는 자로 의도된 자를 말하며, 역시 중개자는 제외된다(협약 제4조 (e)).

라.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적 의사표현의 작성, 송신, 수신, 저장 기타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협약 제4조 (f)). 즉, 정보를 전송, 수신, 저장하는 데 이용되는 일체의 기술적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자계약협약 하에서 정보시스템의 소재지는 아무런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이 수신자의 영업소에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마.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이란 해당 시스템에 의하여 어떤 행위가 취해지거나 어떤 응답이 행하여질 때마다 자연인이 검토 또는 개입함이 없이 행위를 하거나 데이터메시지에 응답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한다(협약 제4조 (g)).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제2조 (6)이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제102조 (a) 27에 규정된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에 대응

하는 개념이다.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적어도 한 쪽에는 자연인의 관여 없이 자동적인 교섭과 계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정보시스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은 그 주요 목적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과 구별된다.

마. 영업소(Place of business)

영업소란, 특정 장소로부터 일시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설적인(non-transitory) 설비를 유지하는 장소를 말한다(협약 제4조 (h)). 영업소에 관한 정의규정은 협약 제1조와 제6조의 적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영업소와 관련된 다른 실체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²⁴⁾

(4) 해석원칙

전자계약협약은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를 고려한 협약의 합리적 해석을 위하여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① 협약의 국제적 성격, ② 협약 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성 증진의 필요성, ③ 국제거래에서 신뢰의 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²⁵⁾ 또한 협약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① 협약이 기초하는 일반원칙, ② 일반원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²⁶⁾ 이러한 해석원칙에 관한 규정은 CISG 제7조의 규정을 답습한 것이다.

24)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Supplement No. 17 (A/60/17), para. 37.

25) 협약 제5조 제1항.

26) 협약 제5조 제2항.

(5) 당사자의 소재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의 소재지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전자거래에서 실제 정보는 서버에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협약은 당사자의 소재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6조에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가 1차적으로 당사자의 소재지로 추정된다. 다만, 표시된 장소에 영업소가 없음을 다른 당사자가 증명한 때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어진다. 당사자가 2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만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까지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생각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을 영업소로 한다. 자연인의 경우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별도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위치나 도메인이름·전자우편주소에 나타나는 특정국가에 관한 정보만으로 영업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²⁷⁾ 이는 국제적 전자거래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한 세계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6) 정보요건

전자계약협약은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신원, 영업소 또는 기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정확,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적

27) 이상과 같은 당사자 소재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상기업(virtual companies)이 영업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A/CN.9/571, para. 103.

책임을 감면하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 때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의 범위는 제정법, 규제법, 사법부가 만드는 법 및 절차적인 법까지 포괄한다. 다만, 상인법(*lex mercatoria*)과 같이 국가의 법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²⁸⁾

(7) 전자적 의사표현의 법적 승인

전자계약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기초가 되는 규정이 전자적 의사표현을 법적으로 승인한 제8조이다. 협약 제8조는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5조(데이터메시지의 법적 승인)와 제1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제7조(전자기록, 전자서명,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 제20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등의 입법례와 동일한 취지이다.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의사표현이나 계약이 전자적 의사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집행력이 부인될 수 없다. 또한 협약은 당사자에게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하거나 승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하거나 승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협약 제8조는 협약이 추구하는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다. 즉, 종이 서면 기반의 의사표현과 동일 수준의 법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다만, 협약 제8조는 소극적으로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을 규정한 것뿐이며 절대적으로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²⁹⁾ 나아가 많은 국가들이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내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계약협약은 당사자에게 전자적 의사표현의 사용이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³⁰⁾

28) Explanatory note, para. 127.

29) A/CN.9/546, para. 41.

30) A/CN.9.527, para. 108.

(8) 형식 요건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현이나 전자계약이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협약 제9조 제1항). 즉, 방식의 자유(freedom of form)의 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다.³¹⁾ 그런데 이처럼 계약자유 원칙을 반영하여 특별한 형식에 의한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입증이 필요하다. 이 때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서면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며,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종이 서면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채택하는 형식이 종이 서면과 기능적 동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고려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약은 서면(writing) 요건, 서명(signature) 요건, 원본(original form)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 서면 요건

협약에 따르면, 법률에 의사표현 또는 계약에 관하여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적 의사표현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서면요건을 충족한다(협약 제9조 제2항). 협약은 종이 서면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전자적 의사표현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현성 및 가독성이 있는 정보의 기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최소한의 기본요건(threshold requirement)을 설정하고자 의도하였다.³²⁾ 전자적 의사표현의 서면성은 접근 가능성, 이용가능성, 향후 참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접근가능성(accessible)은 컴퓨터 데이터

31) Explanatory note, para. 136.

32) Explanatory note, para. 145.

형태의 정보가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³³⁾ 이용 가능성(usable)은 사람에 의한 이용과 컴퓨터 처리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향후 참조(subsequent reference)는 너무 강한 기준을 설정하는 “지속성(durability)”이나 “불변성(non-alterability)”도 아니고, 너무 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가독성(readability)”이나 “가해성(intelligibility)”도 아닌 절충적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³⁵⁾

나. 서명 요건

법률이 서명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적 의사표현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서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적 의사표현에 포함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이용되고, 그 방법이 (i) 관련 약정을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전자적 의사표현이 생성 또는 유통된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거나, (ii) 그 자체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당사자 신원 확인 기능 및 전자적 의사표현에 포함된 당사자 의사의 표시 기능을 갖추었다고 사실상 입증된 경우에는 서명 요건이 충족된다(협약 제9조 제3항).

다. 원본 요건

법률이 원본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i) 전자적 의사표현 등이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보장이 존재하고, (ii) 전자적 의사표현에 포함된 정보가 이용 가능하도록 생성된 경우에 그 정보가 이용 가능해야 할 사람에게 표시(display)될 수 있으면, 전자적 의사표현의 원본요건은 충족된다(협약 제9조 제4항). 이 때 무결성의 판단기준은, 의사표

33) *Id.*, para. 146.

34) *Id.*

35) *Id.*

현, 저장 또는 표시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 기입이나 변경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변경되지 않았는지의 여부이다(협약 제9조 제5항).

(9) 전자적 의사표현의 송신과 수신 시기와 장소

전자적 의사표현의 송신 시기는 송신자(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만일 전자적 의사표현이 송신자(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현이 수신된 때가 송신시기이다(협약 제10조 제1항).

전자적 의사표현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주소로부터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표현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협약 제10조 제2항). 수신자가 지정하지 않은 전자주소에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 수신된 것을 인식하고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된 때이다. 전자적 의사표현이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령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적 의사표현이 송수신되면, 협약에 의한 영업소에서 발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협약 제10조 제3항). 또한 수신 시기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2항은 전자주소를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소재지가 협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협약 제10조 제4항).

(10) 청약의 유인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현을 통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그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문을 하는 쌍방향 응용프로그램(interactive applications))

을 이용한 제안을 포함)은, 그 제안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경우에 구속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협약 제11조).

(11)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과 자연인 사이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그 계약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별적인 작용을 자연인이 검토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이나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협약 제12조).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³⁶⁾

(12) 계약내용의 이용(입수) 가능성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현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 전부를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입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협약 제13조). 또한 전자계약협약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전자적 의사표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해주지도 않는다(협약 제13조). 계약내용의 이용 내지 입수 가능성을 각 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국제전자계약에서의 법적 확실성, 투명성,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³⁷⁾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자계약협약도 계약내용의 이용가능성을 규정하는 국내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36)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1항.

37) Explanatory note, para. 217.

나아가 전자계약협약은 국내법상의 규제적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특히 소비자보호규제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규율하는 규제적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용 또는 입수 가능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³⁸⁾

(13) 전자적 의사표현 상의 실수

자연인이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으로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현 상에서 입력 실수(input error)를 한 경우에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이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는 그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전자적 의사표현 중에서 입력 실수한 부분을 철회할 권리(right to withdraw)를 가진다(협약 제14조 제1항). 즉, (i)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실수를 인식한 직후 다른 당사자에게 그 실수를 통지하고 전자적 의사표현 상에 실수 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ii)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나 가치(material benefit or value)도 이용하거나 수취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협약은 위와 같은 입력 실수 이외의 실수를 규율하는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협약 제15조 제2항).

전자계약협약이 의도하는 것은 전통적인 계약 체결 과정보다 특히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의성 없는 키입력 실수(unintentional keystroke errors)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³⁹⁾ 이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한편 계약체결상의 다른 실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의 법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만일 자연인에 의한

38) A/CN.9/509, para. 63.

39) Explanatory note, para. 234.

40) Explanatory note, para. 235.

입력 실수가 아니거나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 사실상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전자계약협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하여는 국내법 상의 실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⁴¹⁾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수가 이루어지고, 협약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도 당사자는 입력 실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철회권(right to withdraw)을 가질 뿐이고, 수정권(right to correct)은 허용되지 않는다.⁴²⁾

(14) 협약의 효력

전자계약협약 제4장에는 “최종규정”이라는 표제 하에 협약의 기탁처, 서명·비준·승낙·승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국내 영역 단위에서의 효력, 적용범위에 관한 선언, 다른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의사표현, 선언의 절차와 효과, 유보, 발효, 적용시기, 폐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요 쟁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계약협약의 기탁처는 UN 사무총장으로 지정되며(협약 제15조), 지역경제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의 전자계약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협약 제17조).⁴³⁾ 가입국이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영역단위(territorial unit)를 가지는 경우에 영역단위 전체 또는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하여 그

41) A/CN.9/548, para. 20.

42) 전자계약협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정권을 부여할 것인지 철회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철회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A/CN.9/571, para. 193.

43) 어느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그 국가가 개별적으로 전자계약협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으로서도 전자계약협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협약 제17조 제1항 단서).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협약 제18조 제1항). 이 때 선언(declaration)은 기탁처에 통지되어야 하고,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영역단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다(협약 제18조 제2항). 아울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단위에 소재하는 영업소는 체약국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협약 제18조 제3항). 만일 위와 같은 선언이 없다면 그 국가의 모든 영역단위에 효력이 미친다(협약 제18조 제4항). 한편, 가입국은 (i) 체약국 사이 또는 (ii) 당사자가 전자계약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협약 제19조 제1항). 또한 제21조에 규정된 선언에 특정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협약 제19조 제2항).

체약국이 선언을 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협약 제21조 제1항). 다만, 서명시 이루어진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시에 확인(confirmation)되어야 하며(협약 제21조 제1항), 선언과 확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협약 제21조 제2항). 선언은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관계 국가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협약의 발효 이후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된 선언은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1조 제3항). 이러한 선언은 기탁처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협약 제21조 제4항). 선언의 수정 또는 철회는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1조 제4항). 선언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외에 이 협약 하에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협약 제22조).

전자계약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중의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첫 날에 발효한다(협약 제23조 제1항). 이처럼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때에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협약 제23조 제2항). 전자계약협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선언은 협약 또는 선언의 발효일(또는 각 가입국에 대한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전자적 의사표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협약 제24조), 소급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의 체약국은 기탁처에 공식적인 서면 통지(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를 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협약 제25조 제1항), 폐기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발효한다. 만일 폐기 통지에 12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협약 제25조 제2항).

제 2 절 전자상거래 W/G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경과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2009.6.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2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2010.6. 뉴욕에서 개최된 제43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콜로키움 개최를 요청하였다. 2011.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4차 본회의에서 실무작업반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여 2011.10. 비엔나에서 첫 실무작업반 IV 회의(제45차 WG IV)가 개최되었다. 이후 2012.6. 뉴욕에서 개최된 제45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의결하고, 2012.10. 제46차 실무작업반 IV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 초안의 준비에 합의하였다. 2013.5. 뉴욕에서 개최된 제47차 실무작업반 IV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제출되어,

축조검토가 이루어졌다. 제47차 회의에 한국대표로서 정경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락 책임(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필자가 참가하였다.

2009.6.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2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2010.6. 뉴욕에서 개최된 제43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콜로키움 개최를 요청하였다. 2011.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4차 본회의에서 실무작업반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여 2011. 10. 비엔나에서 첫 실무작업반 IV 회의(제45차 WG IV)가 개최되었다. 이후 2012.6. 뉴욕에서 개최된 제45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의결하고, 2012.10. 제46차 실무작업반 IV에서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 초안의 준비에 합의하였다. 2013.5. 뉴욕에서 개최된 제47차 실무작업반 IV 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제출되어, 축조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각국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2013.12. 비엔나에서 제48차 실무작업반 IV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 3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제 1 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개관

UNCITRAL 제42차 본회의에서 미래 아젠다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를 사무국에 요청한 이후 제43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를 요청하였다.

시기	구분	장소/ 회차	주요내용
'09. 6月	본 회 의	비엔나/ 42차	o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
'10. 6月		뉴욕/ 43차	o 전자양도성기록 관련 논의를 전자상거래콜로키움에 개최 요청
'11. 6月		비엔나/ 44차	o WG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 위임
'12. 6月		뉴욕/ 45차	o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적 검토

제44차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법적 규범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작업반 IV(Working Group IV)에 이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47차 실무작업반 IV 한국대표단은 법무부 대표로 정경영 교수(성균관대학교), 미래창조과학부 대표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와 최정락 책임(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파견되었다.

제 3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시기	구분	장소/ 회차	주요내용
'11. 10월	실 무 작 업 반	비엔나/ 45차	o 실무작업반 IV 첫 공식회의
'12. 10월		비엔나/ 46차	o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o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 초안 준비 합의
'13. 5월		뉴욕/ 47차	o 사무국이 준비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출 o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규정별 축조 검토

제47차 실무작업반 IV 회의⁴⁴⁾는 2013.5.13.(월)~5.17.(금)까지 매일 2차례, 총 1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의장(Chairman)에 스페인의 Agustin MADRID PARRA, 보고자(Rapporteur)로 일본의 Atsushi KOIDE가 선출되었다.

제47차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준비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A/CN.0/WG.IV/WP.122)(이하 제47차 회의에서 논의된 규정안을 “제1초안”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진행하였고, 추후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수정하기로 하였다.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의 형식(예, 협약, 모델법, 가이드 등)에 관하여는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44) 제47차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알제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디아, 이란, 이태리, 일본, 말타,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베네수엘라 등 31개 회원국, 비회원국인 8개국(안도라, 벨기에, 콩고민주공화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오만, 스웨덴)의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의 대표, ABA 등 다수의 비정부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제 2 절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및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⁴⁵⁾⁴⁶⁾

1. 구성 체계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규정안’이라 함)은 4개 영역,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규정 부분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제외, 제3조 정의, 제4조 해석, 제5조 당사자 자치, 제6조 정보 요건으로 구성되었고,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부분은 제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제8조 서면, 제9조 서명, 제10조 점유, 제11조 교부(및 배서), 제12조 원본, 제1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 제1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 제15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 제16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제17조 지배, 제18조 소지자, 제19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 제2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 제21조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오류, 제22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제2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통합, 제24조 변환, 제25조 [명도][이행을 위한 제시], 제26조 의무의 이행, 제2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 제28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담보권, 제29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자

45) 제2절에서 소개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내용 및 제47차 회의 내용의 분석은 최경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 - 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2013.7.)을 기초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46)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각 규정의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능한 원문의 표현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초안 형태로 제시된 원문에서 사용된 “[]”, “/” 또는 “...”와 같은 표현은 그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둘 이상의 번역례 중 어느 하나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모두 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부분은 제30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제31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제32조 신뢰성[라이선스 요건], 제33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 부분은 제3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의 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4개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제47차 WG IV 회의에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각 조문별 검토에서 기술적 중립성에 관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모아졌고, 일부 조문의 삭제나 수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이전의 전자계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에서도 적용범위, 일반규정,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 최종규정 등 총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정안의 구성 체계도 여러 장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 일반규정

(1) 적용범위(제1조)

가. 주요 내용

규정안은 모든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된다. 또한 규정안은 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접근에 기초한 일반적인 규칙들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⁴⁷⁾ 또한 규정안은 제1조 제2항에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

47) A/CN.9/761, para. 18.

서에 관한 기존의 실체법의 규율범위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⁴⁸⁾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종이 기반 양도성기록과 기능적 동가성을 가지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으로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종이 기반 양도성기록에 대한 법률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적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적용의 과도한 우월을 피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2) 적용제외(제2조)

가. 주요 내용

규정안은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에도 우선하지 않는다. 이는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의 제1조를 투영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⁴⁹⁾ 또한 규정안은 (a) 전자 주식 등가물, (b) 전자 지불 수단 및 (c)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초안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제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제2항에 규정된 “주식의 전자적 등가물(electronic equivalents of securities)”의 의미를 “주식, 사채 기타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증서의 전자적 등가물(electronic equivalents of securities such as shares, bond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financial derivatives)”로 명확히 할 것에 합의하였다. 전자 지불 수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48) A/CN.9/761, paras. 20, 28, 49, 62, 68, 71, 79 and 85; A/CN.9/WG.IV/WP.122, para. 4.

49) A/CN.9/WG.IV/WP.122, para. 6.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전자어음, 전자환어음, 전자수표는 전자지불수단에서 제외하고 은행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등의 지불수단을 전자지불수단으로 이해하여 동 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권은 전자양도성기록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 규정안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 하지만 지불 수단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이 활용되는 실무를 고려할 때 이 규정안의 적용범위에서 “전자 지불 수단”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3) 정의(제3조)

규정안 전체를 통하여 활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정정(amendment)”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의미한다.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이란 [소지인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종이문서 기반의 양도 가능 기록 또는 증서의 전자적 등가물을 의미한다.⁵⁰⁾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holder)”이란 규정안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issuance)”이란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그 기록의 발행을 의미한다.

50) 동 규정안에서 다루는 전자양도성기록은 주로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제외 대상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참고로 전자계약협약은 ① 규제를 받는 환거래, 외국환 거래, 은행간 지급 시스템, 증권 기타 금융 자산이나 증권과 관련된 은행간 지급 협약 또는 청산·결제 시스템, 중개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권 기타 금융자산 또는 금융증권의 매매, 대차, 소지 또는 환매 약정에 따른 담보권의 이전 등 특수 금융거래(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s)(협약 제2조 제1항 (b)), ② 환어음, 약속 어음,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가능한 증권(협약 제2조 제2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자(issuer)”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하는 [또는 발행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의무의 이행”이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대로 물품의 인도 또는 일정 금액의 지불을 의미한다.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란 소지인(bearer)이나 수익자가 종이문서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발급(release)”이란 전자양도성기록을 그 최초 소지인의 지배하에 두는 물리적 기술적 단계를 의미한다.

“교체(replacement)”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매체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제시(surrender)”란 제25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transfer)”이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다만 핵심적인 규율대상인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4가지 안이 제시되었다.⁵¹⁾ 즉, 제1안은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와 동일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기록(an electronic record that is capable of performing the same

51) A/CN.9/WG.IV/XLVII/CRP.1.

[evidentiary] functions as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제2안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이 기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의 전자적 등가물 (the electronic equival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y electronic record that is capable of performing the same functions as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제3안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증명하고, 채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권리가 전자 기록의 이전의 수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전자 기록(an electronic record evidencing a right to claim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in which the obligor expressly or implicitly states that that right may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y means of the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제4안은 '전자 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해당 기록에 합체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a record used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s incorpor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itself)'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4가지 안 중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제4안이 가장 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단 제4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해석(제4조)

규정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근원, 그 적용 상의 통일성의 증진에 대한 필요 및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규정안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순응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해석에 관한 제4조는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7조,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3조, 전자계약협약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제5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⁵²⁾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국제 규범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따른 해석 원칙을 규정하였지만, 국제거래 규범의 속성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근원을 가지는 모델법(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전자계약협약 및 제네바협약 등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 제안되었다.

(5) 당사자 자치(제5조)

규정안의 규정은 약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고 또한 그 효과는 약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4조나 전자계약협약 제3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7차 WG IV의 논의에서도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여부나 구체적인 이용 방식 등은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6) 정보 요건(제6조)

가. 주요 내용

규정안의 어떤 규정도 자연인이 그들의 신원, 영업 소재지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연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 불완전 또는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는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전자계약협약 제7조가 투영된 규정으로서 회원국의 국내법이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⁵³⁾

52) A/CN.9/WG.IV/WP.122, para. 9.

53)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은 제재를 동반하거나 강행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3.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1)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제7조)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계약협약 제8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47차 WG IV에서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형식요건(제8조 및 제9조)

법이 [정보][의사표현⁵⁴]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의사표현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전자적 의사표현에 의한 전자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제8조).

또한 법이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의사표현]이 자연인에 의하여 서명되도록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paras. 122-128.
54) ‘communication’을 ‘의사표현’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1호(2010), 86-87면 참조.

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제9조). 즉, (a) [그 전자양도성기록][그 의사표현]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 (b) (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그 전자양도성기록][그 의사표현]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이나 (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제8조와 제9조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와 제7조, 전자계약협약 제9조에 기초한 것으로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형식 요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⁵⁵⁾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 안의 의사표현(communication)은 [] 밖으로 빼내어 규정안에 존속시키되 나머지 []의 문구는 삭제하는데 합의하였다.

(3) 점유(제10조)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4) 교부[및 배서](제11조)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교부[및 배서]를 요구하거나 교부[및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9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을 통하여 충족된다.

55) A/CN.9/WG.IV/WP.122, para. 12.

이에 대하여 제47차 WG IV에서는 [] 안의 배서에 대하여는 교부와 연결할 필요 없이 제8조와 제9조의 서면, 서명 요건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11조에서는 삭제하는데 합의하였다.

(5) 원본(제12조)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원본 형태로 이용가능하거나 보관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원본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 즉, (a) 최초로 최종본으로서 생성된 때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이 포함하는 정보의 완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확신이 존재할 것 및 (b) 전자양도성기록이 포함하는 정보가 이용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자연인에게 표시될 수 있을 것. 또한 제12조 제1항 (a)를 위하여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8조 및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4항이 투영된 규정이다. 그러나 제47차 WG IV의 논의에서는 제1항 전단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완결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유일성, 무결성, 지배에 대한 관련 규정안을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6)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제13조)

가. 주요 내용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동일한 이행 의무와 관련하여 다수 기록의 유통을 방지][단일한 소지인에게만 의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을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그

런데 (a) 전자양도성기록이 재생산될 수 없도록 확보하는 방법 또는 (b)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authoritative) 사본을 할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뢰할 만한 방법을 충족한다(제13조 제2항). 이러한 유일성의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에게만 채무 이행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⁵⁶⁾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유일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 제13조와 제17조를 연계하여 제13조를 삭제하거나 재작성하자는 주장, 제13조와 제17조를 통합하자는 주장, 제13조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하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7)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제14조)

가. 주요 내용

전자양도성기록이 최초 발행된 이후 그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경]과는 별개로,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한다. 또한 신뢰성의 표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는 삭제하고, [] 내의 추가적인 변경(the addition of any change)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2조와 제14조는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56) A/CN.9/761, paras. 33-37; A/CN.9/WG.IV/WP.118, paras. 39-50.

(8)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제15조)

가. 주요 내용

규정안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은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자연인의 동의는 자연인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규정안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의는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항과 제3항은 현행 규정안 그대로 유지하되, 제2항은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와 같은 개별 규정에 대한 참조 없이 [] 내에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9)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제16조)

가. 주요 내용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은 발행자 및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는 최초 소지자의 동의를 요한다(제1항).⁵⁷⁾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에 요구되는 정보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어야 한다(제2항).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양도성기록의 단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동의를 포함하는 부가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제3항).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은 소지인에게

57) A/CN.9/761, para. 32.

발행될 수 있다(제4항). 전자양도성기록은 최초 소지자가 제17조(지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는][실행할 수 있을] 때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5항).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제6항).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하나의 원본 이상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단독 공적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최초 소지자가 지배를 설정하는 경우]에 충족된다(제7항).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제1항의 규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되었다. 반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요구되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전자양도성기록에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여, Secretary에 수정을 요구하였다. 제3항과 관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전 생애 주기에서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문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환경 하에서만 소지인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을 수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점에 관하여는 실체법이 다를 문제이기 때문에 제5항을 삭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널리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실체법의 요건과 발행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전자거래법의 일반원칙과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을 유지하고 정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실체법이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제5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항은 유지하고, 제7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지배(제17조)

가. 주요 내용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이익의 이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이 그 사람이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대상이 되는 자로 신뢰할 만 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제1항). 전자양도성기록이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로서 발행되고 이전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제1항을 충족하고,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즉, (a) 제2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단독 공적 사본(single authoritative copy)이 독자성을 갖추고,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경우, (b) 공적 사본이 (i) 그 문서가 발행된 자연인 또는 (ii) 전자양도성기록이 가장 최근 이전된 자연인으로서 지배를 주장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경우, (c) 공적 사본이 지배를 주장하는 자연인에게 표시되고 보관|보유되고 있는 경우, (d) 공적 사본의 독자성 및 완결성이 보전되는 경우 및 (e) [각 공적 사본이 공적 사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그 공적 사본이 것처럼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지배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통일상법전 상의 전자권원증서의 지배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하면서 미세한 수정을 가한 것이다.⁵⁸⁾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제17조는 제47차 WG IV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규정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a) 점유의 기능적 등가물

58) Section 7-106 (Control of Electronic Document of Titl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은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는 점, (b) 제17조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지배를 가지는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실체적 권리를 다루지 않음, (c) 유일성과 지배의 규정은 독자적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점, (d) 지배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실상 소지자(de facto holder)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지자가 적법한 소지자인지의 문제는 실체법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 (e) 제10조와 제17조를 결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11) 소지인(제18조)

제17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지는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다. 소지인은 ... 같은 자격을 부여 받는다. 초안의 형태로서 아직 소지인이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소지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실체법적 논의로서 규정안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제19조)

가. 주요 내용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는 그 기록의 지배를 이전함에 의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1항).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 하는 법에 따라] 소지인에게 발행된 전자양도성 기록은 명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또한 같다(제2항).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양수인이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획득한[설정한][실행할 수 있게 된]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양도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양도된 것으로 본다.](제3항) 전자양도성기록의 양수인은 전자매체의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양도시

에 양도를 지시하는 진술(statement)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제5항).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종이 기반 양도성기록의 이전을 위하여 배서나 합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건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2항, 제4항, 제5항도 전자적 환경에서의 교부 및 배서의 기능적 등가성을 수용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3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amendment)(제2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을 위한 신뢰할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는 무허가 정정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제1항). 정정에 의하여 영향 받는 당사자가 종이 기반 문서나 증서의 정정에 관하여 고지 받도록 법이 요구하는 때에, 동일한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에 적용하여야 한다(제2항). 정정된 정보가 공적 사본에 반영되는 때에 [지배를 이전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은 효력이 발생한다(제3항). 정정시에 정정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제4항).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은 공인된 바에 따라 쉽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제5항). 이러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에 관하여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실체적 규율의 색채를 제거하고 기능적 등가성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오류(제2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입력 실수를 다루는 신뢰할 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전자계약협약 제14조와 유사한 규정이

지만,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전자계약협약 제14조의 입력 실수에 관한 규정은 전자양도성기록이 이용되는 환경과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1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제21조의 삭제에 합의하였다.

(15)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제22조)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2 또는 그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a)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분할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b)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제16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과 다른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c) 분할시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이후에 효력 및 유효성을 잃고,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⁵⁹⁾ 제10조에 기초를 둔 규정인데,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은 실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체법 하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규정 안에서는 전자적 환경에서 그러한 분할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6) 전자양도성기록의 통합(제23조)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가 그 [발행자/채무자]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단일한 전자양도성기록으로

59) 로테르담규칙의 공식 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의 국제해상물품운송 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다.

통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a) 그 소지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통합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b) 신규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제16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c) 통합시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들은 그 이후에 효력 및 유효성을 잃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신규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2조와 마찬가지로 로테르담 규칙 제10조에 기초를 둔 규정인데,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전자양도성기록의 통합도 실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체법 하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규정안에서는 전자적 환경에서 그러한 통합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7) 교체(제24조)

가. 주요 내용

1) 전자양도성기록으로의 변환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발행되고 그 소지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그 문서나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 (a) 그 소지자는 그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하나 이상이 발행되었다면 그 모두를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교체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b) 그 [발행자/채무자]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대신에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제16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을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 그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그 이후에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

2)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로의 변환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그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의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 (a) 그 소지인은 [발행자/채무자]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교체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b) 그 [발행자/채무자]는 전자양도성기록 대신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종이 기반의 문서 또는 증서를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이후에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

3) 변환시의 절차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나 전자양도성기록의 교체는 그 원래의 [형식(form)][매체(medium)]에서 재발행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교체 혹은 변환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은 WG의 앞선 논의 결과 로테르담 규칙 제10조의 교체에 관한 규정을 투명한 것이다.⁶⁰⁾ 용어에 대하여도 기존에 “conversion/convert”와 “replacement/replace”의 두 가지 용어례가 논란이 되었지만, 일단 규정안과 같이 replacement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향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18) [제시][이행을 위한 제시](제25조)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제시][이행을 위한 제시]를 요구하거나 [제시|명도][이행을 위한 제시]의 부재시의 결과를

60) A/CN.9/761, paras. 72-77.

규정하는 경우에 그 소지인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

이 규정은 종이 기반 문서의 물리적인 제시의 기능적 등가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⁶¹⁾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17조의 지배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19) 의무의 이행(제26조)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제1항). 발행자/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2항). 즉, (a)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주장하는 자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소지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b) 1명 이상이 그 소지인이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 또는 (c) ...인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발행자/채무자]가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그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보관|보유하여야 하며 그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효과에 관한 진술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제3항). 채무가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전자 기록은 제20조에 따라 정정되어야 하며 [일부 이행된 효과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항)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제26조는 실체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61) A/CN.9/761, paras. 70-71.

(20)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제27조)

가. 주요 내용

전자양도성기록이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 때, 전자양도성기록은 폐지(terminate)되어야 하며 전자양도성기록의 향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제1항).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지시하는 진술을 그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폐지된 효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됨으로써 충족된다(제2항).

나. 제47차 WG IV의 논의

제27조의 규정이 실체법적 문제인 근원적인 채무의 소멸을 다루지 않고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를 다루고자 목표하고 있지만,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에 관한 현재의 규정이 전자양도성기록의 효력의 소멸을 다룸으로써 실체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기능적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점을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담보권(제28조)

담보권은 현행 담보거래법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 상에서 창설될 수 있다. 담보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2007년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상의 담보권의 의의를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⁶²⁾

62) A/CN.9/WG.IV/WP.122, para. 56.

(22)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제29조)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보관(archive)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충족된다. 즉, (a)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할 것, (b)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형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기(represent) 위하여 표시(demonstrate)될 수 있는 형태로 편철될 것, 그리고 (c) 그 경우에 해당 정보가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자와 소지자(들) 및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은 때와 발행되거나 이전된 때에는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철될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4.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

(1) 제3자 서비스 제공자(제30조~제33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0조). 즉, (a)…. 초안의 형태로서 아직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31조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로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즉, (a) 그 정책과 실무(practice)에 관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representations)에 따라 행할 것, (b)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실체적 대리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것, (c) 신뢰

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일정 사항⁶³⁾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 (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일정 사항⁶⁴⁾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 (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활용할 것 등이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적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제31조 제2항).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법 제31조 제1항 (e)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제32조). 즉, (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 (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 (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 (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 (e) 독립 기관(independent body)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 (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관(accreditation body)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선언의 존재 또는 (g)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한 과실(negligence) 또는 착오(mistake)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33조 제1항). 반면,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제33조 제2항). 즉, (a) 불이행이 그 지배를 넘는 장애로부터 발

63) (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ii) 전자양도성기록에서 확인된 소지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때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 (iii)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때 또는 그 이전에 유효했다는 사실.

64) (i) 발행자/채무자 및 소지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 (ii) 전자양도성기록이 이용될 수 있는 목적이나 가치대가(value)에 관한 제한, (iii)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유효하고 훼손되지(compromised) 않았다는 사실, (iv)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약정명기된(stipulated)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

행하였고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가 고려되거나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b)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손해 또는 (c) 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또는 그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너무 구체적이고 기술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2)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승인(제34조)

전자양도성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의 여부나 그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제1항). [법제화하는 국가] 밖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 수준을 제공한다면 [법제화하는 국가] 내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과 [법제화하는 국가] 내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제2항). 전자양도성기록이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수준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승인된 국제 기준(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및 기타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항).

제47차 WG IV의 논의 결과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한 것만 다루고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4 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제 1 절 전자상거래 W/G 논의에 대응한 국내 법제도 검토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하여 비교 검토를 상정할 수 있는 국내 법률로는 주로 전자문서나 전자거래, 증권적 채권과 관련된 법률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 각 내용을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의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주요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본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법은 UNCITRAL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UNCITRAL 전자계약협약과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한다.⁶⁵⁾

65) 전자계약협약과 기본법의 비교법적 검토에 대하여는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제1호(2010), 77-104면 참조.

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다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재확인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2항). 이외에 전자문서의 보관(동법 제5조), 송수신의 시기 및 장소(동법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정에 의하여 종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수행하던 업무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일한 기능을 부여하였고, 한편으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신설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 즉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로서 동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공인전자문서센터보다 완화되어 있어서, 전자문서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이외에 전자문서 관련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이나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비교법적 검토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종래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UN전자계약협약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그 위에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기본법과 직접적인 충돌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배

치되지 않는다. 다만, UN전자계약협약과 기본법은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개별 규정의 논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특별히 고려할 점은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초안 제8조에서 규정한 형식요건이 아직 우리 기본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무상 형식요건은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전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⁶⁶⁾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 주요 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어음법에 의한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2호).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동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어음에 관하여는 전자어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에는 “어음법”에 의한다(동법 제4조).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과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제1항).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

66) 형식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전자문서의 법적 승인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향후 법개정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동법 제6조제3항). 또한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법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제4항).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1항).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2항).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법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7조제3항).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위와 같은 배서를 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7조제5항).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9조제1항).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9조제1항 단서).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다(동법 제9조제2항).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제3항).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제4항).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동법 제9조제4항 단서).

한편,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 약관의 명시·통지 등,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비교법적 검토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다양한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반면, 전자어음법은 전자약속어음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전자약속어음을 포함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논의는 전자어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전자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 어음법 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국제거래에서의 최소한의 기준(minimum requirement)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자어음법 하에서 일반 전자서명을 이용하더라도 간주의 효과만 없을 뿐 전자어음의 발행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지 않는 전자어음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자양도성기록의 상호인정이나 유통 강화 방향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전자어음법 상의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아직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어음법 상의 구체적인 기준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부합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1)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전자금융거래이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1호). 이중에서도 특히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2호).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1호).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2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

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화폐를 제외한다(동법 제2조제14호 단서). 한편,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이고,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며,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15호). 전자채권이란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하고,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고, 금융기관을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6호).

동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양도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다만,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5만원)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전자채권의 양도는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2)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된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동법 제20조제1항). 이 때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 이 있고 위의 전자채권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동법은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제21조의2 정보 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의무,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23조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및 벌칙(제7장)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비교법적 검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폭넓은 전자금융거래수단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서 규율하는 대상은 전자양도성기록이며, 적용배제 대상으로는 전자주식 등가물 및 전자지불수단이 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전자지불수단의 범위이다. 전자지불수단의 범위를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전자환어음, 전자수표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면, 전자지불수단을 넓게 이해하면 각종 전자적 지불수단은 모두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전자지불수단은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지불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전자어음, 전자환어음, 전자수표 등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율대상이 된다. 한편,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의미를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해당 기록에 합체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a record used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s incorpor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e electronic record itself)’과 같이 넓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각종 전자지불수단도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율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자채권의 경우에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등록에 의하여 양도됨으로써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를 넓게 파악하게 되면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기존의 양도성기록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술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양도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전자양도성기록 유통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채권의 등록이나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유통체계가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이용자보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 주요 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주요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이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하며(동법 제2조제2호), 채권담보권이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3호). 이상의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은 담보등기를 해야 한다.

(2) 비교법적 검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은 등기의 방법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그 규율대상을 기본적으로 증서에 기반한 권리의 이전을 중심으로 다루는 반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채권담보권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주요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5. 전자서명법

(1) 주요 내용

가. 개요 및 연혁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전자서명법은 총 6장 3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제정되었고,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년 제정 이후 2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 제정당시 주요내용은 전자서명의 효력,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리체계 및 관리업무 등이 되었다. 이후 2001년 12월에 비대칭암호화방식에 기초한 디지털서명기술에 특정된 공인인증제도를 재정하고, 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등 각국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요건의 구비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조건에 포함하고, 공인인증업무의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개정에서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작성표준 마련,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양도·대여를 금지,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나.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상 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⁶⁷⁾ 여기에서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은 ①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만 유일하게 속할 것, ②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⁶⁸⁾ 이와 관련 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것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67)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68) 전자서명법 제3조

(2) 비교법적 검토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분은 이 상에서 살펴본 전자서명의 정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유통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이나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에 관한 이슈를 제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이나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에 관하여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을 유지하는 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모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 민 법

(1) 주요 내용

민법은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법으로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 증권적 채권이란 그 채권의 성립·양도·행사 등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을 필요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지시채권·무기명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적 채권은 양도성을 본질로 하며, 유통성의 확보와 거래안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가. 지시채권의 양도

민법상 지시채권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전형적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배서와 교부가 요구된다. 배서는 증서나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하며, 이러한 기명식배서가 원칙이다. 그러나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배서, 즉 약식배서도 가능하다. 약식배서에서는 증서의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고,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도 있으며,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소지인출급배서는 약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시채권에 대하여 환배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지만, 환배서의 인정으로 그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민법상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채권이 이전되는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지시채권증서의 소지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이 인정되며, 어음수표법과는 달리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완화된 선의취득요건 또는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하여 보호된다. 즉, 소지인이 증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권리없음을 알지 못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그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514조). 또한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15조).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지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민법 제518조). 지시채권의 변제는 채무자의 현영업소에서 지급

기일에 변제하면 된다. 멸실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일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제521조).

나. 무기명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은 특정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무기명사채, 상품권, 승차권, 극장입장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무기명채권은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지명하는 한편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으로서, 무기명채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2) 비교법적 검토

지시채권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은 독자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거래를 비롯한 국내 규범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국제규범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민법이 규율하는 증권적 채권으로서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모두 전자적인 수단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향후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의 및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민법상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모두 전자양도성기록에

해당된다. 그런데 민법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요건으로서 ‘배서’나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요건과 같은 실체법적 규율은 지양하면서,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목표로 한다. 즉, 실체법적으로 ‘배서’나 ‘교부’를 부인하거나 이외에 추가적인 실체법적 요건을 요구하기 보다는 ‘배서’나 ‘교부’와 기능적 등가성을 가지는 조치들을 통해서 실체법과 마찬가지로의 양도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으로 인하여 민법상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자적으로 증권적 채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기능적 등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나 조치가 있는 경우에 양도 가능하도록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거나 아니면 입법적 조치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예상 논의 및 대응 전략

1. 제48차 회의 예상 논의 주요내용 및 검토

제47차 회의에서 축조심의된 결과와 그 이후의 각국의 비공개 협의 등을 바탕으로 제48차 회의에서 논의할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⁶⁹⁾ (이하 제48차 회의에서 논의할 규정안을 “제2초안”이라 한다)이 공개되었다. 제2초안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체계와 달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제1조~제6조), 전자거래 규정(제7조~제1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제11조~제28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제29조~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제31조)로 구성되어 있다.

69)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는 A/CN.9/WG.IV/WP.124,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는 A/CN.9/WG.IV/WP.124/Add.1 참조.

(1) 적용범위

제2초안은 규정안의 적용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증서와 전자양도성기록의 기능적 동가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대응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또한 추가 여부의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이 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일정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회원국 국내 실체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적 동가성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응하는”을 부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2초안에서 추가된 제3항은 규정안이 국내 실체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제2조의 적용제외 규정에 규정하거나 각국별 유보사항(declaration)을 통하여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적용범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하다.

(2) 적용제외

제2초안은 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국내법 외에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금융증서의 범위에 대하여 “이 법은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및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기타 금융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수정하였다. 기존에 논란이 되던 “주식의 전자적 등가물” 개념에 대한 제4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주식, 사채, 금융파생상품 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주식이나 이에 대응할 정도로 유사한 금융증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는 “주식, 사채, 증권, 금융파생상품 등 이에 준하는 금융증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규정함이 더욱 명확하고 타당하다.

(3) 정 의

정의 중 규정안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제4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 화체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제2초안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전자기록”의 개념을 정의에 신설하였다.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전자기록의 정의는 기존의 전자계약협약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메시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자양도성기록을 관리하거나 유통하는 체계 자체에 대한 규율까지도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무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이행할 채무를 가진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자”로 정의하였다.

전자기록의 정의는 기존의 데이터메시지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메시지와 명확한 구별을 전제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존의 데이터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규정안이 기존 UNCITRAL 규범을 전제로 제정된다는 취지에서 데이터메시지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의 정의는 실체법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4) 당사자자치

제2초안에서는 당사자자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초안의 특정 조문(미정)을 열거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특정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

상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방안이 병렬적으로 포함되어, 제48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 자치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전자계약협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자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5)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제2초안은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은 발행자 및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는 최초 소지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 당사자자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1초안과도 다르지 않다. 다만, 제2초안은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소지인에 대한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한 관점에서 전자양도성기록의 유효성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소지인의 신원이 공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법이 하나 이상의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원본의 발행을 허용하고 하나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이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의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2초안의 변화는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당사자자치, 당사자의 동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법적 승인, 실체법에 대응하여 복수의 전자양도성기록의 발생의 허용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제3항은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부터 효력이 소멸할 때까지 지배에 수반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6)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전자양도성기록 제도를 각국이 운용하는 중에 규정안으로 인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발생 시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지만, 한편으로는 규정안이 각국이 부가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15조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전자양도성기록 제도의 회원국 내 운용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7) 교부·제시 및 배서

제2초안은 기존에 교부와 제시에 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다루던 것을 구분하여 각국의 실체법에서 교부나 제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이전하거나 지배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실체법에 대응하는 기능적 등가성을 구현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

또한 배서의 경우에도 회원국의 실체법이 배서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 규정안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하여 서면성과 서명성을 갖추면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능적 등가성을 구현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타당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8)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와 전자양도성기록 사이에서 자유롭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도 다시 원래 매체로 재발행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24조에 원래 매체로의 재발

행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규정안이 추구하는 전자양도성기록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과 전자양도성기록 사이의 호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9)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

외국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국제적인 승인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2초안 제31조에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무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안은 국제사법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적인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기존의 국제사법 규정의 유효성을 명시하고 있다.

2. 대응전략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모델법, 전자서명 모델법, 전자계약협약 등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여러 규범들을 정립하고 국제적인 법 표준으로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선도 국가로서 규범적 측면에서도 UNCITRAL의 여러 규범들을 실질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UNCITRAL의 새로운 규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안”이 제47차 UNCITRAL WG IV에서 제안되었고, 축조심의회가 진행되었다. 향후 실제로 위 규정안이 UNCITRAL에서 입법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⁷⁰⁾ 그러나 UNCITRAL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면 각국의 관련 입법

70) 제47차 WG IV 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구체적인 법형식을 모델법(Model Law)으로 할 것인지, 협약(Convention)이나 단순한 가이드(Guide)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동향과 국제적인 규범 통일 노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이외에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양도성증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모든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NCITRAL의 앞으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논의될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와 아울러 우리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표단으로서 WG IV 회의에서 대응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UNCITRAL의 작업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하반기에 개최될 제48차 WG IV 회의를 비롯한 UNCITRAL의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우리나라 제도의 소개가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모델법, 전자서명 모델법, 전자계약협약 등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여러 규범들을 정립하고 국제적인 법 표준으로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선도 국가로서 규범적 측면에서도 UNCITRAL의 여러 규범들을 실질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UNCITRAL의 새로운 규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안”이 제47차 UNCITRAL WG IV에서 제안되었고, 축조심의회가 진행되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및 국제적인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제로 위 규정안이 UNCITRAL에서 입법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UNCITRAL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면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제적인 규범 통일 노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이외에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양도성증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모든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NCITRAL의 앞으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48차 회의를 비롯한 향후 논의될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와 아울러 우리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표단으로서

제 5 장 결 론

WG IV 회의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UNCITRAL의 작업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하반기에 개최될 제48차 WG IV 회의를 비롯한 UNCITRAL의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대응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법무부,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 2008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 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4호
- 정완용, “국제 전자계약협약안에 관한 고찰”, 디지털재산법연구, 제4권 제1호, 2005
- 정진명,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국내법에의 수용”, 비교사법, 제16권 2호
- 최경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 - 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7
- ,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1호, 2010
- ,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1집제4호, 2009
- UNCITRAL,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17 (A/66/17)
-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17 (A/67/17)
- UNCITRAL,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A/CN.9/WG.IV/WP.122)

부 록 1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orty-seventh session New York, 13-17 May 2013</p> <p>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General provisions (Articles 1-6) B.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s 7-29) C.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Articles 30-33) D.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 34)</p>	<p>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실무작업반 IV(전자상거래 분과) 제47차 회기 뉴욕, 2013년 5월 13일~17일</p> <p>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p> <p>A. 일반 규정 (제1조~제6조) B.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제7조~제29조) C.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제30조 ~ 제33조) D.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 (제34조)</p>
<p>A. General provisions (Articles 1-6)</p> <p>Draft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is Law applies to any kind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2.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this Law.”</p>	<p>A. 일반 규정</p> <p>제1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모든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 2. 이 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2. Exclusion “1.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p>	<p>제2조 적용제외 1. 이 법은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p>

원 문	번역문
<p>rule of law applicable to consumer protection.”</p> <p>“2. This Law does not apply to the following: (a) electronic equivalent of securities; (b) electronic payment methods; and (c) …”</p>	<p>어떠한 법에도 우선하지 아니한다.</p> <p>2. 이 법은 (a) 주식의 전자적 등가물; (b) 전자 지불 수단; 및 (c)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3. Definitions</p> <p>“For the purposes of this Law: “amendment” means the modif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electronic equivalent of any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entitles the holder to claim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pecifi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hold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 person 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issuance of th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s 16 and 17.</p> <p>“issuer” means a person that issues [or requests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3조 정의</p> <p>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p> <p>“정정”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의미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이란 [소지인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종이문서 기반의 양도 가능 기록 또는 증서의 전자적 등가물을 의미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란 초안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이란 초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그 기록의 발행을 의미한다.</p> <p>“발행자”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하는 [또는 발행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performance of obligation” means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as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eans any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issued on paper that entitles the bearer or beneficiary to claim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pecified in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release” means the physical or technical step of placing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der the control of its first holder.</p> <p>“replacement” means the change in the medium, either from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vice versa.</p> <p>“surrend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p> <p>“third-party service provider” means a third party providing services for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p>	<p>“의무의 이행”이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대로 물품의 인도 또는 일정 금액의 지불을 의미한다.</p> <p>“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란 소지인이나 수익자가 종이문서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p> <p>“발급”이란 전자양도성기록을 그 최초 소지인의 지배하에 두는 물리적 기술적 단계를 의미한다.</p> <p>“교체”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매체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제시”란 제25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p>

원 문	번역문
<p>records. “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transfer of control ov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이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Draft article 4.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p>	<p>제4조 해석 1.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근원, 그 적용 상의 통일성의 증진에 대한 필요 및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준응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5. Party autonomy “The provisions of this Law may be derogated from or their effect may be varied by agreement.”</p>	<p>제5조 당사자 자치 이 법의 규정은 약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거나 그 효과는 약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p>
<p>Draft article 6. Information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erson to disclose their identities, places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erson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p>	<p>제6조 정보 요건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자연인이 그들의 신원, 영업 소재지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연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 불완전 또는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는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B.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7. Legal recogni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an electronic medium.”</p>	<p>B.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p> <p>제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8. Writing “Where the law requires that [information] [a communication]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record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제8조 서면 법이 [정보][의사표현]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전자통신에 의한 전자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9. Signature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a communication] should be signed by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p>	<p>제9조 서명 법이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 [의사표현]이 자연인에 의하여 서명되도록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 (a) [그 전자양도성기록][그 의사표</p>

원 문	번역문
<p>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communication]; and</p> <p>(b) The method used is either:</p> <p>(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communication] was gener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p> <p>(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p>	<p>현]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p> <p>(b)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p> <p>(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그 전자양도성기록][그 의사표현]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p> <p>(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p>
<p>Draft article 10. Possession</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possess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ossession, that requirement is met through th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제10조 점유</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11. Delivery [and endorsement]</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delivery [and endorsement] of a pa-</p>	<p>제11조 교부[및 배서]</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교부[및 배서]를 요구하거</p>

원 문	번역문
<p>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delivery [and endorsement], that requirement is met through the transfer of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9.”</p>	<p>나 교부[및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9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을 통하여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12. Original</p> <p>“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should be made available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original,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There exists a reliabl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ains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generated in its final form; and</p> <p>(b) Where it is required that the inform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ontains be made available, that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display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made available.</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p>	<p>제12조 원본</p> <p>1.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가 원본 형태로 이용가능하거나 보관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원본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p> <p>(a) 최초에 최종본으로서 생성된 때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이 포함하는 정보의 완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확신이 존재할 것</p> <p>(b) 전자양도성기록이 포함하는 정보가 이용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자연인에게 표시될 수 있을 것</p> <p>2. 1(a)의 목적을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p>

원 문	번역문
<p>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13. Uniqueness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used to rend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 [preventing the circulation of multiples records relating to the same performance obligation] [entitling only a single holder to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p> <p>“2. A method satisfies paragraph 1, if it:</p> <p>(a) Ensures tha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annot be reproduced; or</p> <p>(b) Designates an authoritative cop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제1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동일한 이행 의무와 관련하여 다수 기록의 유통을 방지][단일한 소지인에게만 의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을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p> <p>2. 다음과 같은 방법은 1.을 충족한다:</p> <p>(a) 전자양도성기록이 재생산될 수 없도록 확보하는 방법, 또는</p> <p>(b)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 사본을 할당하는 방법</p>
<p>Draft article 14. Integrity of an</p>	<p>제1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used to provide assurance tha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tains its integrity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issued.</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1. 전자양도성기록이 최초 발행된 이후 그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p> <p>2. 1.의 목적을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경]과는 별개로,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신뢰성의 표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15. Consent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quires the consent of the parties as provided in draft articles 16, 19, 22, 23 and 24.]</p>	<p>제15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p> <p>1.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은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p>

원 문	번역문
<p>“3. The consent of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nferred from the person’s conduct.”</p>	<p>3.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자연인의 동의는 자연인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16.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issuer and the first holder to use an electronic medium.</p> <p>“2.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shall be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3. Upon issuanc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contain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consent as provided in paragraph 1 as well as information to uniquely identify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4.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ssued to bearer.</p> <p>“5.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have been issued when the first holder [establishes] [is able to exercise] control of the</p>	<p>제16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은 발행자 및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는 최초 소지자의 동의를 요한다.</p> <p>2.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에 요구되는 정보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어야 한다.</p> <p>3.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양도성기록의 단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1.에 규정된 동의를 포함하는 부가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p> <p>4.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은 소지인에게 발행될 수 있다.</p> <p>5. 전자양도성기록은 최초 소지자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설정하는][실행할 수 있을] 때에 발행된</p>

원 문	번역문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6. Upon issuanc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subject to control until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7. Where the law requires the issuance of more than on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requirement is be met if [a single authoritative cop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xists] [the first holder establishes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것으로 본다.</p> <p>6. 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p> <p>7.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하나의 원본 이상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단독 공적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최초 소지자가 지배를 설정하는 경우]에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17. Control</p> <p>“1. A person has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method used for evidencing transfer of interests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liably establishes that person as the person to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issued or transferred.</p> <p>“2. A method satisfies paragraph 1, and a person is deemed to hav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ssued and transferred in such a manner that:</p>	<p>제17조 지배</p> <p>1.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이익의 이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이 그 사람이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대상이 되는 자로 신뢰할 만 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이전되는 경우에 그 방법은 1.을 충족하고,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p>

원 문	번역문
<p>(a) A single authoritative cop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xists which is unique, identifiable and unalter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draft article 20;</p> <p>(b) The authoritative copy identifies the person asserting control as:</p> <p>(i) the person to which the document was issued; or (ii) the person to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most recently transferred;</p> <p>(c) The authoritative copy is communicated to and maintained by the person asserting control;</p> <p>(d) The uniqueness and integrity of the authoritative copy is preserved; and</p> <p>(e) [Each copy of the authoritative copy and any copy of a copy is readily identifiable as a copy that is not the authoritative copy] [the authoritative copy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p>	<p>(a) 제2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양도성기록의 단독 공적 사본이 독자성을 갖추고,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경우</p> <p>(b) 공적 사본이 (i) 그 문서가 발행된 자연인 또는 (ii) 전자양도성 기록이 가장 최근 이전된 자연인으로서 지배를 주장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경우</p> <p>(c) 공적 사본이 지배를 주장하는 자연인에게 표시되고 보관 보유되고 있는 경우</p> <p>(d) 공적 사본의 독자성 및 완결성이 보전되는 경우, 및</p> <p>(e) [각 공적 사본이 공적 사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그 공적 사본이 것처럼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p>
<p>Draft article 18. Holder</p> <p>“1. A person having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is the holder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A holder is entitled to: … ”</p>	<p>제18조 소지자</p> <p>1. 제17조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지는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다.</p> <p>2. 소지자는 … 같은 자격을 부여</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받는다.
<p>Draft article 19. Transfer of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hold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transf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y transferring the control of the record to the transferee.</p> <p>“2.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the transfer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to bearer may be transferred to a named person and vice versa.</p> <p>“3. [The 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effectiv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when the transferee obtains [establishes] [is able to exercise]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17.</p> <p>“4. The transfere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use of the electronic medium.</p> <p>“5. Upon transfer, a statement indicating the transfer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19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는 그 기록의 지배를 이전함에 의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2.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 하는 법에 따라] 소지인에게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은 명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또한 같다.</p> <p>3.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양수인이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획득한[설정한][실행할 수 있게 된]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양도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은 양도된 것으로 본다.]</p> <p>4. 전자양도성기록의 양수인은 전자매체의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5. 양도시에 양도를 지시하는 진술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20.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procedure for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provided, which shall also address unauthorized amendments.</p> <p>“2. When the law requires that parties affected by the amendment should be notified with respect to the amendment of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e same requirement shall apply to the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3.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or a purpose other than transferring control] is effective when the amended information is reflected in the authoritative copy.</p> <p>“4. Upon amendment,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n amendment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5. An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readily identifiable as authorized.”</p>	<p>제2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을 위한 신뢰할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무허가 정정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p> <p>2. 정정에 의하여 영향 받는 당사자가 종이 기반 문서나 증서의 정정에 관하여 고지 받도록 법이 요구하는 때에, 동일한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에 적용하여야 한다.</p> <p>3. 정정된 정보가 공적 사본에 반영되는 때에 [지배를 이전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은 효력이 발생한다.</p> <p>4. 정정시에 정정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5.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은 공인된 바에 따라 쉽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1. Error in information contained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제21조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오류</p> <p>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p>

원 문	번역문
<p>“A reliable procedure to address input errors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provided.”</p>	<p>입력 실수를 다루는 신뢰할 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2. Divis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divid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to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The holder shall [surrender] [present for divis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newly divid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6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original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other newly divid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p> <p>(c) Upon division, the original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hereafter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p>	<p>제22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p> <p>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2 또는 그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p>(a)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분할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p> <p>(b)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제16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과 다른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분할시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이후에 효력 및 유효성을 잃고,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newly divid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23. Consolida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f the holder of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issuer/obligor] of which is the same, agree with the [issuer/obligor] to consolidat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to a singl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The holder shall [surrender] [present for consolid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o the [issuer/obligor]; (b) The newly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6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original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 Upon consolidation, the original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ease thereafter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p>	<p>제2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통합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가 그 [발행자/채무자]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단일한 전자양도성기록으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a) 그 소지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통합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b) 신규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제16조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c) 통합시 원래의 전자양도성기록들은 그 이후에 효력 및 유효성을 잃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신규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을 확인하</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newly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Draft article 24. Replacement “1. I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document or instrument by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The holder shall [surrender] [present for replacement]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ll of them if more than one has been issued, to the [issuer/obligor]; (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6 which shall inclu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 (c)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ceases thereafter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p>	<p>제24조 변환 교체 1.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발행되고 그 소지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그 문서나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 (a) 그 소지자는 그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하나 이상이 발행되었다면 그 모두를 [발행자/채무자]에게 [제시][교체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b) 그 [발행자/채무자]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대신에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제16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을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 그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그 이후에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 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그</p>

원 문	번역문
<p>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y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p> <p>(a) The holder shall [surrender] [present for replacem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c)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hereafter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3. The replacem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subject to procedures that provide for its reissuance in the original [form] [medium].”</p>	<p>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에 의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인은 [발행자/채무자]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을 [제시][교체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전자양도성기록 대신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종이 기반의 문서 또는 증서를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이후에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3.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나 전자양도성기록의 교체는 그 원래의 [형식][매체]에서 재발행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p>
<p>Draft article 25. [Surrender] [Presentation for performance]</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surrender] [presentation for performance]</p>	<p>제25조 [제시 명도][이행을 위한 제시]</p> <p>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제시][이행을 위한 제</p>

원 문	번역문
<p>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for the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surrender] [presentation for performance], that requirement is met upon demonstration by the holder that it is the holder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시]를 요구하거나 [제시][이행을 위한 제시]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소지인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6. Performance of obligation</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used to provide confirmation that performance of obligation has been effected. Upon such confirm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cease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The issuer/obligor may refuse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f:</p> <p>(a) The person asserting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does not demonstrate that it is the holde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b) There is more than one person demonstrating that it is the holder;</p> <p>or</p> <p>(c) …</p> <p>3. When the [issuer/obligor] refuses</p>	<p>제26조 의무의 이행</p> <p>1.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p> <p>2. 발행자/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p> <p>(a)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주장하는 자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소지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p> <p>(b) 1명 이상이 그 소지인이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 또는</p> <p>(c) …</p> <p>3. 그 [발행자/채무자]가 제2항에</p>

원 문	번역문
<p>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holder shall reta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issuer/obligor] refuse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4. When there is partial 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electronic record shall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20 and [inclu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re was partial performance].”</p>	<p>따라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그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보관[보유하여야 하며 그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효과에 관한 진술이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4. 채무가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전자 기록은 제20조에 따라 정정되어야 하며 [일부 이행된 효과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7. Termin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effect or valid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2, 23, 24 and 26,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terminated and a method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further circulation of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statement to indicate the termin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by including a statement in the electronic</p>	<p>제2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p> <p>1. 전자양도성기록이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 때, 전자양도성기록은 폐지되어야 하며 전자양도성기록의 향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지시하는 진술을 그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폐지된 효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됨으로써 충족된다.</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transferable record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terminated.	
<p>Draft article 28. Security right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security right may be created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ecured transactions law.”</p>	<p>제28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담보권</p> <p>담보권은 현행 담보거래법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 상에서 창설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29. Archiving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be archived, that requirement is met by archiving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p> <p>(a)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b)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rchived in the format in which it was issued or in a format which can be demonstrated to represent accurately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nd</p> <p>(c) Such information, if any, is archived as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the issuer and holder(s)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p>	<p>제29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p> <p>1.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보관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충족된다:</p> <p>(a)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할 것;</p> <p>(b)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형태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될 수 있는 형태로 편철될 것; 그리고</p> <p>(c) 그 경우에 해당 정보가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자와 소지자(들) 및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은 때와 발행되거나 이전된 때에는 그 일</p>

원 문	번역문
<p>date and time when it was issued and transferred as well as when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may be satisfied by using the services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at paragraph are met.</p>	<p>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철될 것.</p> <p>2.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은, 같은 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p>
<p>C. Third-party service providers</p> <p>“Draft article 30. Functions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 provide the following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p>	<p>C. 제3자 서비스 제공자</p> <p>제30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a) …</p>
<p>Draft article 31. Conduct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1. Where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upports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p> <p>(a) Act in accordance with representations made by it with respect to its policies and practices;</p> <p>(b)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ll material representations made</p>	<p>제31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p> <p>1.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p> <p>(a) 그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에 따라 행할 것</p> <p>(b)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실제적 대리의 정확성과 완</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by it that are relevant to the life cycl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c)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 The identity of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ii) That the holder that is identified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d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e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issued;</p> <p>(iii) That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valid at or before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issued;</p> <p>(d)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 The method used to identify the issuer/obligor and the holder;</p> <p>(ii) Any limitation on the purpose or value for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used;</p> <p>(iii)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valid and has not been compromised;</p>	<p>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p> <p>(c) 신뢰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 기록으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p> <p>(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p> <p>(ii) 전자양도성기록에서 확인된 소지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때 해당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p> <p>(iii)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된 때 또는 그 이전에 유효했다는 사실;</p> <p>(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p> <p>(i) 발행자/채무자 및 소지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p> <p>(ii) 전자양도성기록이 이용될 수 있는 목적이나 가치에 관한 제한;</p> <p>(iii)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유효하고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p>

원 문	번역문
<p>(iv)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e) Utilize trustworth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in performing its services.</p> <p>“2.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 bear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p>	<p>(iv)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명기된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p> <p>(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활용할 것.</p> <p>2.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적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p>
<p>“Draft article 32. Trustworthiness [Licensing requirements]</p> <p>“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 paragraph 1 (e) of this Law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utiliz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are trustworthy,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a)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existence of assets;</p> <p>(b)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c)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related parties;</p> <p>(e)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f)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p>	<p>제32조 신뢰성[라이선스 요건]</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법 제31조 제1항 (e)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p> <p>(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p> <p>(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p> <p>(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p> <p>(e) 독립 기관(independent body)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p> <p>(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p>

【부 록 1】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by the State, an accreditation body or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regarding compliance with or existence of the foregoing; or (g) Any other relevant factor.”</p>	<p>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관(accreditation body)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선언의 존재; 또는 (g) 기타 관련 요소.</p>
<p>“Draft article 33. Liability of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1.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by its negligence or mistake with respect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a) Arising from a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if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and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b)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r (c) Arising from the service user’s negligence or violation of its obligation.”</p>	<p>제33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한 과실 또는 착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a) 불이행이 그 지배를 넘는 장애로부터 발행하였고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가 고려되거나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이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b)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손해; 또는 (c) 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또는 그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p>

원 문	번역문
<p>D.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34. Recognition of foreig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1.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legally effective, no regard shall be had to the location wher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ssued or used.</p> <p>“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p> <p>“3. In determining wheth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any other relevant factors.”</p>	<p>D.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p> <p>제34조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승인</p> <p>1. 전자양도성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의 여부나 그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p> <p>2. [법제화하는 국가] 밖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 수준을 제공한다면 [법제화하는 국가] 내에서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과 [법제화하는 국가] 내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p> <p>3. 전자양도성기록이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신뢰수준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승인된 국제 기준 및 기타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p>

부 록 2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

원 문	번역문
<p>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Forty-eighth session Vienna, 9-13 December 2013</p> <p>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 ferable records</p> <p>A. General (Articles 1-6) 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s 7-10) 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 cords (Articles 11-28) 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Articles 29-30) 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 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ticle 31)</p>	<p>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p> <p>실무작업반 IV(전자상거래 분과) 제48차 회기 비엔나, 2013년 12월 9일~13일</p> <p>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p> <p>A. <u>일반</u> (제1조~제6조) B. <u>전자거래 규정</u> (제7조~제10조) C. <u>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 (제11 조~제28조) D. <u>제3자 서비스 제공자</u> (제29조 ~ 제30조) E. <u>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u> (제31조)</p>
<p>A. General</p> <p>“Draft article 1. Scope of applica- tion “1.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gov- erning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this Law.</p>	<p>A. <u>일반</u></p> <p>제1조 적용범위</p> <p>1. 이 법은 <u>모든 유형의 전자양도 성기록에 적용한다.</u> 2. 이 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u>[대응하 는]</u>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 서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p>

원 문	번역문
<p>“[3. This Law applies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other than as provided by [law governing a certain typ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p>	<p><u>[3. 이 법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일정 유형의 전자양도성기록을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전자양도성기록에 적용한다.]</u></p>
<p>“Draft article 2. Exclusion “[1.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applicable to consumer protection.] “2. This Law does not apply to securities, such as shares and bond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financial derivatives.”</p>	<p>제2조 적용제외 [1. 이 법은 소비자보호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에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u>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및 금융과생상품을 포함하는 기타 금융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p>
<p>“Draft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 record used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obligation incorpor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record.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means a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issued on paper that entitles the bearer or beneficiary to claim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pecified in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electronic record” means information generated, communicated, received</p>	<p>제3조 정의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이란 <u>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 화체된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을 의미한다.</u>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 또는 증서”란 소지인이나 수익자가 종이문서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성, 통신, 수신, 또는 저장</p>

원 문	번역문
<p>or stored by electronic means.</p> <p>“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issuance of th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s 14 and 17.</p> <p>“issuer” means a person that issues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n its own behalf.</p> <p>“hold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a person 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the transfer of control ov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mendment” means the modif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22..</p> <p>“performance of obligation” means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as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obligor” means the person specifi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o has the obli-</p>	<p><u>된 정보를 의미한다.</u></p> <p>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이란 초안 <u>제14조</u>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그 기록의 발행을 의미한다.</p> <p>“발행자”란 그 자신을 위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인”이란 초안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p> <p>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이란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정정”이란 <u>제22조에</u>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의미한다.</p> <p>“의무의 이행”이란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대로 물품의 인도 또는 일정 금액의 지불을 의미한다.</p> <p>“채무자”란 이행할 채무를 가진 <u>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특정된 자</u>를 의미한다.</p>

원 문	번역문
<p>gation to perform.</p> <p>“replacement” means the change in the medium, either from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vice versa.</p> <p>“third-party service provider” means a third party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29 and 30.”</p>	<p>“교체”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로부터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매체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란 <u>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과 관련된</u>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p>
<p>Draft article 4. Interpretation</p> <p>1. This Law is derived from [...] of international origin.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the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p> <p>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p>	<p>제4조 해석</p> <p>1. <u>이 법은 국제적인 근원의 [...]로부터 유래한다.</u>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근원, 그 적용 상의 통일성의 증진에 대한 필요 및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p> <p>2.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순응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5. Party autonomy</p> <p>1. [Draft articles **, ** and ** may be derogated from or their effect may be varied by agreement.]</p> <p>[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by agreement the provisions of</p>	<p>제5조 당사자 자치</p> <p>1. <u>[제**조, 제**조 및 제**조는 배제될 수 있거나 그 효과가 약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달리 할 수 없다.]</u></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this Law.]</p> <p>2. Such an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rights of any person that is not a party to that agreement.</p>	<p>2. <u>그러한 약정은 해당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Draft article 6. Information requirements</p> <p>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erson to disclose its identity, place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erson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p>	<p>제6조 정보 요건</p> <p>이 법의 어떤 규정도 자연인이 그들의 신원, 영업 소재지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연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 불완전 또는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는 법적 결과로부터 구제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B.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p> <p>Draft article 7. Legal recogni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p>	<p>B. <u>전자거래 규정</u></p> <p>제7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적 승인</p> <p>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p>
<p>Draft article 8. Writing</p> <p>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information]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n electronic record] if the</p>	<p>제8조 서면</p> <p>법이 [의사표현][정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거나 서면의 부재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접근가능하다면 <u>[전자적 의사표현][전자기록]</u>에 의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그 요건은 충족</p>

원 문	번역문
<p>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p>	<p>족된다.</p>
<p>Draft article 9. Signature</p> <p>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should be signed by a person][a signature of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mmunication][an electronic record]; and</p> <p>(b) The method used is either:</p> <p>(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communication] [an electronic record] was generate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p> <p>(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p>	<p>제9조 서명</p> <p>법이 <u>[의사표현이 자연인에 의하여 서명될 것][자연인의 서명]</u>을 요구하거나 서명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으로써 충족된다.</p> <p>(a) <u>[그 의사표현][전자기록]</u>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 및</p> <p>(b)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p> <p>(i) 관련 약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u>[그 의사표현][전자적 기록]</u>이 생성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p> <p>(ii) 그 자체 또는 추가적 증거와 함께 (a)에 규정된 기능을 사실상 충족한 것으로 입증된 방법</p>
<p><i>Moved to Article 16.</i></p>	
<p><i>Divided and Moved to Article 18 and Article 20.</i></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10. Original</p> <p>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presented/available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an original],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original,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p> <p>(a) … ; and</p> <p>(b) …”</p>	<p>제10조 원본</p> <p>1. 법이 [정보가 원본 형태로 제시/이용가능하거나 유지될 것][원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원본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p> <p>(a) … ; 및</p> <p>(b) …”</p>
<p>C.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Draft article 11. Uniqueness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render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nique.</p> <p>2. A method satisfies paragraph 1, if it:</p> <p>(a) Designates an authoritative cop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ich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 and</p> <p>(b) Ensures that the authoritative cop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annot be reproduced.</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p> <p>제1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p> <p>1. 전자양도성기록을 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p> <p>2. 다음과 같은 방법은 1.을 충족한다:</p> <p>(a) 그렇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 사본을 할당하고;</p> <p>(b) 전자양도성기록의 공적 사본이 재생산될 수 없도록 확보할 것</p>
<p>Draft article 12. Integrity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employed to provide assurance that an</p>	<p>제12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p> <p>1.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발행시부터 그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신뢰</p>

원 문	번역문
<p>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tains its integrity from its issuance.</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p> <p>(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change that arise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p>	<p>할 만한 방법이 <u>사용</u>되어야 한다.</p> <p>2. 1.의 목적을 위하여:</p> <p>(a) 완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자양도성기록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생겨나는 [추가적인 변경]과는 별개로,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어야 하며, 그리고</p> <p>(b) 신뢰성의 표준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13. Consent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out its consent].</p> <p>2.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quires the consent of the parties.</p> <p>3. The consent of a person to us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ay be inferred from the person’s conduct.</p>	<p>제13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 동의</p> <p>1.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인이 <u>그 동의 없이</u>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p> <p>3.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자연인의 동의는 자연인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p>
<p>Draft article 14.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p>	<p>제14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은 발행</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transferable record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issuer and the first holder to use an electronic medium.</p> <p>2. Nothing in this Law precludes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bearer.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the identity of the holder to be disclosed.]</p> <p>3. Upon issuance,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subject to control until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4. Where any rule of law governing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permits the issuance of more than one original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 more than one original is issued, this may be achieved with respect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y ...</p>	<p>자 및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용하는 최초 소지자의 동의를 요한다.</p> <p>2. <u>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소지인에 대한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소지인의 신원이 공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u></p> <p>3. <u>발행시,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을 때까지 지배에 따른다.</u></p> <p>4. <u>[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법이 하나 이상의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 원본의 발행을 허용하고 하나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이는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u></p>
<p>Draft article 15. Additional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issuanc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eyond that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performing the same functions]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p>	<p><u>제15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u></p> <p>1. <u>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9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초과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u></p>

원 문	번역문
<p>instrument].</p> <p>2. Nothing in this Law precludes the inclusion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ddition to that contained in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performing the same functions]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u>2.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 정보에 더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u></p>
<p>Draft article 16. Possession</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possess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ossession, that requirement is met through th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draft article 17.</p>	<p>제16조 점유</p> <p>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점유를 요구하거나 점유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17. Control</p> <p>1. A person has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a method employed for the [use] [management]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reliably establishes that person as [the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has the de facto power ov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person to which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as issued or transferred].</p>	<p>제17조 지배</p> <p>1.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의 <u>[이용][관리]</u>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 그 사람이 <u>[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양도성기록 상에 사실상 권한을 가지는 자][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전되는 대상이 되는 자]</u>로 신뢰할 만 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2. A method satisfies paragraph 1, and a person is deemed to have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ssued and transferred in such a manner that:</p> <p>[(a) the uniqueness and integrity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r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11 and 12;</p> <p>(b)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dentifies the person asserting control as: (i) the person to which the record was issued or (ii) the person to which record was most recently transferred; and</p> <p>(c)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maintained by the person asserting control].”</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이전되는 경우에 그 방법은 1.을 충족하고, 자연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p> <p><u>[(a) 전자양도성기록의 유일성 및 완결성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존되는 경우;</u></p> <p><u>(b) 전자양도성기록이 지배를 주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식별한 경우: (i) 그 기록이 발행된 자 또는 (ii) 기록이 가장 최근에 이전된 자; 그리고</u></p> <p><u>(c) 전자양도성기록이 지배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u></p>
<p>Draft article 18. Delivery</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delivery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delivery,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control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21.</p>	<p><u>제18조 교부</u></p> <p><u>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교부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제21조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이전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충족된다.</u></p>

원 문	번역문
<p>Draft article 19. Presentation</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present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by demonstrating that the person has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7.</p>	<p><u>제19조 제시</u></p> <p><u>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제시의 부재시의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자가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u></p>
<p>Draft article 20. Endorsement</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endorsement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endorsement,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hen the requirements in draft articles 8 and 9 are met.</p>	<p><u>제20조 배서</u></p> <p><u>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배서를 요구하거나 배서의 부재에 따른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에, 제8조 및 제9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은 충족된다.</u></p>
<p>Draft article 21. Transfe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To transfer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holder shall transfer the control of the record to the transferee.</p> <p>2.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the transfer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p>	<p><u>제21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전</u></p> <p><u>1. 전자양도성기록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소지자는 양수인에게 그 기록의 지배를 이전하여야 한다.</u></p> <p><u>2.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규율 하는 법에 따라] 소지인에게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은 명의</u></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to bearer may be transferred to a named person and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sued to a named person may be transferred to bearer.</p>	<p>인에게 양도될 수 있고 <u>명의인에게 발행된 전자양도성기록은 소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u></p>
<p>Draft article 22. Amendment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procedure for amendment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provided whereby the amended information is reflect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s readily identifiable as such.</p> <p>2. Upon amendment,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n amendment has taken place shall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u>제22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정정</u></p> <p>1. <u>[[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정정된 정보가 전자양도성 기록에 반영되고 그대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전자양도성기록상의 정보의 정정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u></p> <p>2. 정정시에 정정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3. Replacement</p> <p>1. I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document or instrument with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for replacement] the paper-based trans-</p>	<p><u>제23조 변환 교체</u></p> <p>1.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가 발행되고 그 소지자 및 [발행자/채무자]가 그 문서나 증서를 전자양도성기록으로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자는 그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발행자/채무</p>

원 문	번역문
<p>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4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nd</p> <p>(c) Upon issuan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e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2.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replace that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ith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for replacem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issuer/obligor] shall issue to the holder, in place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con-</p>	<p>자]에게 [교체를 위하여]제시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대신에 <u>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를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제14조에 따른 전자양도성 기록을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u> 그리고</p> <p>(c) <u>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시,</u> 그 종이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는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2.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그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나 증서로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는데 동의한다면:</p> <p>(a) 그 소지인은 [발행자/채무자]에게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를 위하여] <u>제시</u>하여야 한다;</p> <p>(b) 그 [발행자/채무자]는 전자양도성기록 대신에 전자양도성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전자양도성기록을 교체하였다는 효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종이 기반의 문</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tained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it replaced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p> <p>(c) Upon issuance of the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p> <p>3. The consent of the parties required in paragraphs 1 and 2 may be given at any time prior to the replacement.</p>	<p>서 또는 증서를 소지인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종이 기반 문서 또는 증서의 발행시, 그 전자양도성기록은 <u>크</u>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다.</p> <p>3. 제1항 및 제2항에 요구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교체 이전에는 언제나 가능하다.</p>
<p>Draft article 24. Reissuance in the original medium</p> <p>1. A reliable procedure for the reissuance 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the original medium prior to its replacement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23 shall be provided.</p>	<p><u>제24조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u></p> <p>1. 제23조에 따른 교체 이전에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나 전자양도성기록을 원래 매체로 재발행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p>
<p>Draft article 25.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a [corresponding]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procedure to provide for the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hall be provided.”</p>	<p><u>제25조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및 통합</u></p> <p>1. 대응하는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전자양도성기록의 분할 또는 통합을 규정하는 신뢰할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p>

원 문	번역문
<p>[“1. I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has been issued and the holder and the [issuer/obligor] agree to divid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to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for divis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issuer/obligor];</p> <p>(b) Two or mor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4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p> <p>(c) Upon divis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ivis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divis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resulting new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2. If the holder of two or mor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issuer/obligor] of which is the same, agrees with the [issuer/obligor] to consolidate the electronic trans-</p>	<p>[1.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고 소지인 및 [발행자/채무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2 또는 그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p>(a) 소지인은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분할을 위하여] <u>제시</u>하여야 한다;</p> <p>(b) <u>둘 이상의</u> 신규 분할된 전자양도성기록은 <u>제14조에</u>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u>이전에 존재했던</u> 전자양도성기록과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p> <p>(c) 분할시, <u>이전에 존재했던</u> 전자양도성기록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i) 분할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분할일 및 (iii) <u>생성된</u> 신규 전자양도성기록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2. [발행자/채무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전자양도성기록의 소지자가 그 [발행자/채무자]와 그 전자양도성기록을 단일한 전자양도성기록으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p>

원 문	번역문
<p>ferable records into a singl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The holder shall present [for consolidatio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o the [issuer/obligor];</p> <p>(b)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4 and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p> <p>(c) Upon consolidation, the pre-exist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ease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and shall include: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consolidation has taken place; (ii) date of consolidation; and (iii) information to identify the consolidated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a) 그 소지자는 전자양도성기록을 [발행자/채무자]에게 [통합을 위하여] <u>제시</u>하여야 한다;</p> <p>(b)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은 <u>제14조</u>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고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u>이전에 존재했던</u> 전자양도성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c) 통합시, <u>이전에 존재했던</u> 전자양도성기록들은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고,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통합이 발생한 효과에 대한 진술, (ii) 통합일 및 (iii) 통합된 전자양도성기록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Draft article 26. Termination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1. A reliable method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further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upon its termination] [whe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ceases to have effect or validity].</p> <p>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statement to indicate the termination</p>	<p><u>제26조</u> 전자양도성기록의 폐지</p> <p>1. 전자양도성기록의 향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u>[그 폐지시][전자양도성기록이 효력 또는 유효성을 잃는 때]</u> 신뢰할만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p> <p>2. 법이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의 폐지를 지시하는 진술</p>

원 문	번역문
<p>of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be included in th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by including a statement in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terminated.</p>	<p>을 그 문서 또는 증서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에 폐지된 효과에 관한 진술이 포함됨으로써 충족된다.</p>
<p>Draft article 27.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for security right purposes 1. [Subject to any rule of law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 reliable procedure to allow the 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for security right purposes shall be provided.</p>	<p><u>제27조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 1. <u>[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 담보권을 목적으로 한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허용하는 신뢰할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u></p>
<p>Draft article 28. Retention of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or information therein] be retained, that requirement is met by retaining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or information therein]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a)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b)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p>	<p><u>제28조 전자양도성기록 [상의 정보]의 보관 보유</u> 1. 법이 종이 기반의 양도성 문서나 증서 <u>[또는 그 안의 정보]</u>가 <u>보관 보유</u>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요건은 전자양도성기록을 <u>보관 보유</u>함으로써 충족된다: (a) 그에 포함된 정보가 향후의 참조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할 것; (b) <u>전자양도성기록의 완결성이 제</u></p>

원 문	번역문
<p>transferable record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 12; and</p> <p>(c) Information, if any,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issuer and holder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the date and time when it was issued and transferred as well as when it ceases to have any effect or validity is made available.</p>	<p><u>12조에 따라 확보될 것; 그리고</u></p> <p>(c) <u>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자와 소지인 및 발행되고 이전되는 일시와 효력이나 유효성을 잃는 일시를 식별하게 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가 이용 가능할 것.</u></p>
<p>D. Third-party service providers</p> <p>Draft article 29. Conduct of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1. Where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upports the use of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that third-party service provider shall:</p> <p>(a) Act in accordance with statements made by it with respect to its policies and practices;</p> <p>(b)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of all statements made by it;</p> <p>(c)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formation about it;</p> <p>(d)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from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i) The method used to identify the</p>	<p><u>D. 제3자 서비스 제공자</u></p> <p><u>제29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임무</u></p> <p>1.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p> <p>(a) 그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u>진술에 따라</u> 행할 것</p> <p>(b)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u>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u></p> <p>(c) 신뢰하는 당사자가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u>그것에 대한 정보를</u>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p> <p>(d) 신뢰하는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자양도성기록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수단을 제공할 것:</p>

원 문	번역문
<p>[issuer/obligor] and the holder;</p> <p>(ii) That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retained its integrity and has not been compromised;</p> <p>(iii)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p> <p>(e) Use trustworth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in performing its services.”</p>	<p>(i) [발행자/채무자] 및 소지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방법;</p> <p>(ii) <u>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완결성을 보관보유하고 손상되지 않았을 것;</u></p> <p>(iii)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명기된 책임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제한</p> <p>(e) 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을 <u>이용할 것.</u></p>
<p>Draft article 30. Trustworthiness</p> <p>For the purposes of article 29, paragraph 1 (e)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utiliz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are trustworthy,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p> <p>(a)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existence of assets;</p> <p>(b)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p> <p>(c)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p> <p>(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related parties;</p> <p>(e)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p> <p>(f)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the State, an accreditation body or the third-party service provider regarding compliance with or ex-</p>	<p><u>제30조</u> 신뢰성</p> <p>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절차 및 인력이 신뢰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나 신뢰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u>제29조</u> 제1항 (e)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p> <p>(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 및 인력;</p> <p>(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p> <p>(c) 전자양도성기록의 처리를 위한 절차;</p> <p>(d)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p> <p>(e) 독립 기관(independent body)에 의한 감사의 정규성 및 범위;</p> <p>(f) 전술한 사항의 준수 또는 존재와 관련한 국가, 인정 기관 (accreditation body)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선언의 존재;</p>

【부 록 2】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2초안 원문-번역문 대조표

원 문	번역문
<p>istence of the foregoing; and (g) Any other relevant factor.</p>	<p><u>그리고</u> (g) 기타 관련 요소.</p>
<p>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raft article 31. Non-discrimination of foreig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1. Nothing in this Law affects the application of the conflict of laws rules governing a paper-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2.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was issued or used in a foreign State.]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legally effective, valid or enforceable, no regard shall be had to the location where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s issued or used.]”</p>	<p><u>E.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u> <u>제31조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무차별</u> <u>1.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종이 기반 양도성 문서 또는 증서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u>2. [전자양도성기록은 그것이 외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성이 부인되지 말아야 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이 법적인 효력, 유효성 또는 강제성을 가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자양도성기록이 발행되거나 이용되는 장소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u></p>